

부처별 긴급지원업무(제25조의3 관련)

구분	주 지원기관	기능 내용	보조 지원기관
기능 1	행정안전부	정보의 수집·분석·전파	국방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, 방송통신위원회 등
기능 2	행정안전부	인명구조	기획재정부, 국방부, 농림축산식품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 등
기능 3	행정안전부	이재민 수용·구호	기획재정부, 국방부, 농림축산식품부, 보건복지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 등
기능 4	방송통신위원회	재해지역 통신소통 원활화	국방부, 행정안전부, 산업통상자원부, 해양수산부, 경찰청 등
기능 5	보건복지부	의료서비스, 감염병 예방·방역, 위생점검	국방부,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국토교통부 등
기능 6	행정안전부	시설 응급 복구(장비, 인력, 자재)	기획재정부, 국방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환경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조달청, 산림청 등
기능 7	경찰청	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	기획재정부, 법무부, 국방부,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환경부 등
기능 8	환경부	유해화학물질 처리, 쓰레기 수거·처리	기획재정부, 법무부, 국방부,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 등
기능 9	산업통상자원부	긴급에너지 수급	기획재정부, 국방부, 행정안전부, 국토교통부 등
기능 10	행정안전부	단기 지역안정(복구비, 위로금 지급)	기획재정부, 국방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 등
기능 11	행정안전부	재해 수습 홍보	기획재정부, 외교부, 법무부, 국방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방송통신위원회 등

[기능 1] 정보의 수집·분석·전파

[illegible]

비고

1. “서울교통공사 등”이란 서울교통공사, 인천교통공사, 부산교통공사, 코레일공항공철도주식회사,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, 대구도시철도공사, 광주도시철도공사,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말하며, 이하 이 표에서 같다.

[기능 2] 인명구조

[illegible]

[기능 3] 이재민 수용·구호

[illegible]

[기능 4] 재해지역 통신소통 원활화

[illegible]

[기능 5] 의료서비스, 감염병 예방·방역, 위생점검

[illegible]

[기능 6] 시설 응급복구(장비·인력·자재)

[illegible]

[기능 7] 재해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

[illegible]

[기능 8] 유해화학물질 처리, 쓰레기 수거·처리

[illegible]

[기능 9] 긴급에너지 수급

[illegible]

[기능 10] 단기 지역안정(복구비, 위로금 지급)

[illegible]

[기능 11] 재해 수습 홍보

[illegible]